

# 규제특례 확대로 글로벌대학 혁신 가속화

- 5개 지역에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추가 적용으로 글로벌대학 혁신 가속화 지원
- 통합대학(일반대+전문대) 내에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학위과정 편입학 허용 및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지원비율 상향(25%→5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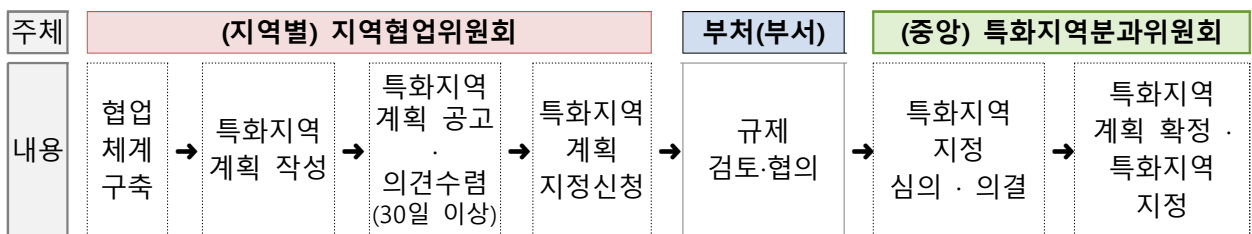
교육부(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)는 6월 9일(월)부터 ‘대구·경북’, ‘광주·전남’, ‘울산·경남’, ‘충북’, ‘전북’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(이하 ‘특화지역’)을 변경지정하여, 총 12건(중복 제외 시 6건)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.

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특례 제도로, 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. 2021년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(지방대육성법)」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,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·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총 27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왔다.

## <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개요 >

- (목적)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과감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(4+2년)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

### - (지정절차)



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자율적이고 과감한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, 글로벌대학의 혁신모델 실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. 교육부는 글로벌대학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(2024.11.~2025.2.)을 운영하였고, 그 결과 접수된 89건 중 40건을 지난 4월 심의·의결한 데 이어, 이번에는 나머지 49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항을 추가로 확정하여 특화지역 변경지정에 반영하였다.

이번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, 교원인사, 대학경영 3개 분야에 걸쳐 총 12건(중복 제외 시 6건)이며, 이를 포함한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(중복 제외 시 20건)에 달한다.

<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규제특례 내용 >

분야		규제특례 내용	특화지역
학사 제도	통합대학의 편입학	(현행) 통합대학(일반대+전문대) 내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, 학사학위과정 진학을 위한 편입학 가능 여부 모호 ※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29조 제2항 → (특례) 교육과정 연계 시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/100,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/100 이내 범위에서 허용	광주·전남, 전북
	표준현장 실습학기제	(현행) 국고·지방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지원비율은 최저임금의 25% 이내로 제한 ※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30조 제5항 제3호 → (특례) 정부·지자체가 지정·관리하는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 및 출연연 등에 한해 실습지원비 지원 확대(25%→50%)	광주·전남, 대구·경북, 울산·경남, 충북
교원 인사	국립대의 주요보직 자격	(현행) 국립대 부총장,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은 (부)교수 중 임명 ※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7조 제1항 → (특례) 외부인사 임명 허용	울산·경남
	강사의 주당 강의시간	(현행)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 6시간 이하(최대 9시간)로 제한 ※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6조 제2항 → (특례) 주당 강의시간 9시간 이하(최대 12시간)로 확대 허용	울산·경남
대학 경영	교지·교사 임차 활용 범위	(현행) 건축물 또는 토지 임차하여 교사·교지로 활용하는 경우 교지경계선에서 20km 이내 및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 위치 ※ 「대학설립운영규정」 제9조 제1항 → (특례) 해당 캠퍼스에 한해 단일교지로 인정(단, 동일 광역지자체내)	대구·경북
	연구용역비 지급대상	(현행) 해당 국립대 재직중인 교직원 대상 일반연구비, 정책연구비 지급 제한 ※ 「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」 III-5.연구용역비 → (특례) 해당 국립대학 재직 중인 교직원 대상 일반연구비, 정책연구비 지급 허용	대구·경북, 울산·경남, 충북

특히, 학사제도와 관련하여 도립대 등 전문대학-일반대학의 통합승인을 받은 국립창원대, 국립목포대, 원광대는 2026학년도부터 한 대학에서 일반 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. 이 중 국립목포대와 원광대의 경우, 통합대학 내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일 대학의 일반학사 과정으로 진학하고자 할 때 정원의 편입학 전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같은 학교 안에서 연속적인 학업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 또한,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, 출연연구기관, 그리고 정부·지자체가 지정·관리하는 산업체에서 실습하는 경우, 실습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이 기존 최저임금의 25%에서 50%까지 확대되어,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연계한 실전형 연구인력 양성 등 대학과 실습기관 간의 협력 활성화가 기대된다.

교원인사 분야에서는 울산·경남지역 국·공립대학 주요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되었다. 이에 따라 경상국립대, 국립창원대, 경남도립거창대, 경남도립남해대는 부총장,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용하여 외부의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또한,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도 기존 6시간에서 9시간(최대 12시간)까지 확대되어, 울산대는 첨단산업 분야 등 대학 특성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특정분야 강의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.

대학경영 측면에서는 대구·경북지역 교자·교사 임차범위 활용 확대로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특화분야 캠퍼스를 구축·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. 한동대는 경주, 영덕, 울진, 울릉 지역에 캠퍼스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실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‘지역특화 집중학기’를 활성화하고 있다.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공 지식을 실천에 적용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,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도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. 대구한의대는 영덕캠퍼스에는 ‘스마트팜·기능성 소재·식품산업’을, 청도캠퍼스에서는 ‘기능성 소재·식품분야·치유산업’을 중심으로 구축하여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·연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아울러, 국립대학의 연구용역비 지급대상을 해당 대학 재직 중인 교직원 까지 확대하여 대학 내부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

기반이 마련된다. 과제의 기획부터 실행, 결과 활용까지 전 과정을 대학 내부에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, 공공성 높은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. 이러한 변화는 국립대학이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.

교육부는 이번 특화지역 변경지정을 통한 규제특례 확대를 글로컬대학이 보다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.

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“이번 규제특례 확대를 통해 대학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장과 미래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.”라고 말하며, “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정착시키겠다.”라고 강조했다.

- 【붙임】** 1.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변경 지정(안)  
2. 전체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 현황

담당 부서 <총괄>	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성하 (044-203-6232)
		담당자	서기관	김재극 (044-203-6235)
			사무관	김은미 (044-203-6265)
<교원인사>	인재양성정책과	담당자	과장	김주연 (044-203-6830)
			사무관	최윤정 (044-203-6938)
			교육연구관	이준호 (044-203-6840)
<학사제도> (편입학)	인재양성지원과	담당자	과장	구본억 (044-203-6845)
			사무관	김수연 (044-203-6931)
<학사제도> (현장실습)	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	담당자	과장	도우동 (044-203-6252)
			사무관	오형석 (044-203-6255)
<대학경영> (연구비)	지역혁신대학지원과	담당자	과장	안주란 (044-203-6243)
			사무관	남성진 (044-203-6918)
<대학경영> (교지·교사)	대학경영혁신지원과	담당자	과장	이홍복 (044-203-6950)
			사무관	장형기 (044-203-6959)



□ **변경지정** (적용기간 : '25.6.9. ~ '29.6.8.)

지역 (특례적용건)	특례 주요내용	적용대상
대구·경북 (3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상향</li> </ul>	국립경국대, 대구한의대, 한동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지·교사 임차 활용 범위 제한 규제 완화</li> </ul>	대구한의대, 한동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용역비 지급대상 제한 완화</li> </ul>	경북대
광주·전남 (2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통합대학(일반대+전문대)의 정원외 편입학 허용</li> </ul>	국립목포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상향</li> </ul>	국립목포대, 국립순천대, 전남도립대
울산·경남 (4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강사 주당 강의시간 제한 규제 완화</li> </ul>	울산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학 주요보직에 개방형 공모제(외부전문가 선임) 도입</li> </ul>	경상국립대, 국립창원대, 울산대, 인제대, 경남도립거창대, 경남도립남해대, 한국승강기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상향</li> <li>연구용역비 지급대상 제한 완화</li> </ul>	
충북 (2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용역비 지급대상 제한 완화</li> </ul>	국립한국교통대, 충북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확대</li> </ul>	건국대(글로벌), 국립한국교통대, 대원대, 서원대, 세명대, 중원대, 청주대, 충북대, 강동대, 충청대, 한국교원대, 충북도립대, 충북보건과학대
전북 (1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통합대학(일반대+전문대)의 정원외 편입학 허용</li> </ul>	원광대

소계 : 5개 지역 12건(중복 제외시 6건)

지역 (특례적용건)	특례 주요내용	적용기간/적용대상
부산 (2건)	① 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 : 졸업학점의 1/4 → 1/2이내 ② 비전임교원 정년기준(65세) 완화	'25.4.21. ~ '29.4.20./ 부산대, 부산교대, 동아대, 동서대
대구 · 경북 (6건)	① 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 : 졸업학점의 1/4 → 1/2이내	'25.4.21. ~ '29.4.20./ 국립경국대, 대구한의대, 한동대
	② 국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명 허용 : 부총장, 대학원장, 단과대학장에 외부인사 임명 허용	'25.4.21. ~ '29.4.20./ 국립경국대, 경북대
	③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	'25.4.21. ~ '29.4.20./ 국립경국대, 경북대 대구한의대, 한동대
	④ 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상향 : 공공기관, 출연연 및 중앙부처·지자체가 선정관리하는 기관에 한해 실습지원비율 확대(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 액의 25%→50%)	'25.6.9. ~ '29.6.8./ 국립경국대, 대구한의대, 한동대
	⑤ 단일교지 요건 완화 : 해당 캠퍼스에 한해 단일교지로 인정	'25.6.9. ~ '29.6.8./ 대구한의대, 한동대
	⑥ 연구용역비 지급대상 제한 완화 : 해당대학 재직중인 교직원에게 일반연구비 지급 허용	'25.6.9. ~ '29.6.8./ 경북대
광주 · 전남 (8건)	① 학점인정 범위 및 기준 완화 : 타교 교육과정 이수결과 학점으로 인정(1/2→3/4범위 내)	'22.3.1. ~ '26.2.28./ 전남대, 목포대 등 15개교
	② 학교 밖 이동수업 기준 완화 : 이동수업 운영승인 권한을 지역협업위원회에 부여	
	③ 통합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: 통합대학(일반대+전문대)에 한해 전문학사학위 수여 허용	'25.4.21. ~ '29.4.20./ 국립목포대, 전남도립대
	④ 국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명 허용 : 부총장, 대학원장, 단과대학장에 외부인사 임명 허용	'25.4.21. ~ '29.4.20./ 국립순천대, 국립목포대
	⑤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	'25.4.21. ~ '29.4.20./
	⑥ 비전임교원 정년기준(65세) 완화	국립목포대, 전남도립대
	⑦ 통합대학(일반대+전문대) 내 정원의 편입학 허용 :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/100,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/100 이내 범위에서 허용	'25.6.9. ~ '29.6.8./ 국립목포대
	⑧ 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확대 : 중앙부처·지자체가 선정·관리하는 지역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	'25.6.9. ~ '29.6.8./ 국립목포대, 국립순천대, 전남도립대

지역 (특례적용건)	특례 주요내용	적용기간/적용대상
	출연연 등에 한해 실습지원비율 확대(월 환산액 기준 최저 임금액의 25%이내 → 50%이내)	
대전 · 세종 · 충남 (5건)	<p>① 학교 밖 이동수업 기준 완화 : 이동수업 운영승인 권한을 지역협업위원회에 부여</p> <p>② 현장실습 운영 특례 : 모빌리티 분야 현장실습지원비 확대(25→50%)</p> <p>③ 자율주행 로봇 실증 교육과정 규제특례 :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인근 공원에서 실증 교육과정을 운영</p> <p>④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 기준 완화 :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학과 간 타 대학 교육과정 이수 시 졸업 필요 인정 학점 기준 완화(1/2→ 3/4 이내)</p>	'23.3.1. ~ '27.2.28./ 건양대, 충남대 등 23개교
	⑤ 교지·교사 임차 활용 범위 제한 규제 완화 : 대학이 위치한 지역(광역지자체 기준)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일교지로 인정	'25.4.21.~'29.4.20./ 건양대
울산 · 경남 (9건)	① 학교 밖 이동수업 기준 완화 : 이동수업 운영승인 권한을 지역협업위원회에 부여	'22.3.1.~'26.2.28./ 경상국립대, 창원대 등 6개교
	② 통합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: 통합대학(일반대+전문대)에 한해 전문학사학위 수여 허용	'25.4.21.~'29.4.20./ 창원대
	③ 계약정원·학과 설치·운영 규정 완화 : 대학이 위치한 지역(광역지자체 기준)내 소유 또는 임차 시설에서도 계약학과 운영 허용	'25.4.21.~'29.4.20./ 경상국립대, 국립창원대, 울산대, 인제대, 도립거창대, 도립남해대, 한국승강기대
	④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	
	⑤ 교지·교사 임차 활용 범위 제한 규제 완화 : 대학이 위치한 지역(광역지자체 기준)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일교지로 인정	'25.4.21.~'29.4.20./ 울산대
	⑥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 제한 규제 완화 : 강사의 교수시간 주당 9시간 이하(최대12시간)로 적용 허용	'25.6.9.~'29.6.8./ 울산대
	⑦ 대학의 주요보직에 개방형 공모제 도입 : 대학 부총장 및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에 외부인사 임명 허용	'25.6.9.~'29.6.8./ 경상국립대, 국립창원대, 울산대, 인제대, 경남도립거창대, 경남도립남해대, 한국승강기대
	⑧ 표준현장실습 직무교육시간 및 실습지원비율 확대 : 중앙부처·지자체가 선정·관리하는 지역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출연연 등에 한해 실습지원비율 확대(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25%이내 → 50%이내)	

지역 (특례적용건)	특례 주요내용	적용기간/적용대상
	⑨ 연구용역비 지급대상 제한 완화 : 해당대학 재직중인 교직원에게 일반연구비 지급 허용	
충북 (6건)	① 겸임교원 채용 규제 완화 : 1년 미만 단위 임용 및 별도 채용절차 특례 부여	'22.3.1.~'26.2.28./ 강동대, 충북대 등 15개교
	② 학교 밖 이동수업 기준 완화 : 이동수업 운영승인 권한을 지역협업위원회에 부여	
	③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④ 비전임교원 정년기준(65세) 완화	'25.4.21.~'29.4.20./ 국립한국교통대, 충북대
	⑤ 연구용역비 지급대상 제한 완화 : 해당대학 재직중인 교직원에게 일반연구비 지급 허용	'25.6.9.~'29.6.8./ 국립한국교통대, 충북대
	⑥ 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확대 : 실습기관이 공공기관 및 출연연 등일 경우 실습지원비율 확대(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25%이내 → 50%이내)	'25.6.9.~'29.6.8./ 건국대(글로벌), 국립한국교통대, 대원대, 서원대, 세명대, 중원대, 청주대, 충북대, 강동대, 충청대, 한국교원대, 충북도립대, 충북보건과학대
전북 (3건)	① 통합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: 통합대학(일반대+전문대)에 한해 전문학사학위 수여 허용	'25.4.21. ~ '29.4.20./ 원광대, 원광보건대
	② 동일 학교법인 내 대학 통합시 통합되는 대학으로 산학협력단의 잔여재산 등 포괄적 승계 허용	
	③ 통합대학(일반대+전문대) 내 정원의 편입학 허용 :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/100,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/100 이내 범위에서 허용	'25.6.9.~'29.6.8./ 원광대
계	7개 지역(12개 시도), 총 39건(충북 제거 시 20건)	

'25년.6월 규제특례 추가 내용 : 5개 지역 12건(충북 제거 시 6건)